

(붙임 2)

**「한국은행 울산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기준」 신·구조문대비표**

현 행	개 정 안	비 고
<p><b>제5조(전략지원부문) ① ~ ④ (생략)</b></p> <p>⑤ <u>울산본부장은 전체 한도 중 특별지원한도를 제외한 한도의 일부를 지역별 경제사정, 금융기관의 대출실적 등을 고려하여 전략지원한도 운용규모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.</u></p> <p>⑥ ~ ⑦ (생략)</p>	<p><b>제5조(전략지원부문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</b></p> <p>⑤ <u>울산본부장은 울산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한도의 40% 이상에서 전략지원한도 운용규모를 정할 수 있다.</u></p> <p>⑥ ~ ⑦ (현행과 같음)</p>	<p>- 전략지원한도 운용 규모의 최소 설정 비율 명시</p>
<p><b>제6조(특별지원부문) ① (생략)</b></p> <p>② <u>특별지원부문은 금융기관이 2021년 9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대하여 취급한 대출금(만기 1년 이내의 원화금융자금대출금 중 일반전자금대출에 한정한다.)의 50%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정한다.</u></p> <p>③ ~ ⑥ (생략)</p>	<p><b>제6조(특별지원부문) ① (현행과 같음)</b></p> <p>② <u>울산본부장은 특별지원한도 운용규모를 정할 수 있으며, 동 운용규모 이내에서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대하여 취급한 대출금(만기 1년 이내의 원화금융자금대출금 중 일반전자금대출에 한정한다.)의 50%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정한다.</u></p> <p>③ ~ ⑥ (현행과 같음)</p>	<p>- 지역본부장의 특별지원한도 운용 규모 설정 근거 신설 및 특별지원한도 운용기한 삭제</p>
<p><b>&lt;신 설&gt;</b></p>	<p><b>부 칙 (2023. 8. 30.)</b></p> <p><b>제1조(시행일)</b> 이 기준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5조(전략지원부문)제5항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</p>	<p>- 부칙신설</p> <p>- 시행일 명시</p>